

9 규칙부 보고

제103회기 규칙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최윤길
서 기 김한욱

1. 조직

- 1) 임 원 : 부장 최윤길, 서기 김한욱, 회계 이해중, 총무 김성환
- 2) 실행위원 : 이정훈 조병수 박영찬 김변호 이현국 박춘길 윤익세 박원봉 박명훈 홍용희 송종완
이천희 이승원 채희명 신성태 김영곤 구재한 김세구 이승범 김성중 박종안 서영석
이기혁 김철원
- 3) 부 원 : 김철환 박영만 박영규 김명권 최병도 곽태천 김봉기 문상무 김광혁 유병오 백성권
임재호 임만순 최득신 공학섭 이병규 강신혁 안흥대 박창건 최은건 곽인식 조동원
이영화 김종희 안철홍 정의섭 강윤철 홍성진 박영철 김봉수 채영택 김재호 김삼성
박영석 안중섭 박영배 이승호 권순익 노갑춘 장중덕 문중수 이형태 김용선 최 근
임종구 김정대 나학수 김윤식 김부일 박광선 배재철 강진호 허 장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18. 9. 10(월) 20:00

☎ 장 소 : 반야월교회

☎ 결의사항

- ① 서기 김한욱 목사, 총무 김성환 목사, 회계 이해중 장로로 조직하기로 하다.
- ② 실행위원은 임원회에 맞게 조직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11(화) 10:00

☎ 장 소 : 반야월교회

☎ 결의사항

- ① 실행위원을 선정하니 이정훈, 조병수, 박영찬, 김변호, 이현국, 박춘길, 윤익세, 박원봉, 박명훈, 홍용희, 송종완, 이천희, 이승원, 채희명, 신성태, 김영곤, 구재한, 김세구, 이승범, 김성중, 박종안, 서영석, 이기혁, 김철원으로 선정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12(수) 10:00

☎ 장 소 : 반야월교회

☎ 결의사항

- ① GMS 이사 정관 수정 심의 건은 수정안대로 받되 제9장 재정 제21절 재정 1항 수정 건은 원안대로 한다.
- ② 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2항 상설위원회 2항 (4) 총회정책연구위원회, (8) 언론홍보위원회는 삭제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12(수) 13:00

☎ 장 소 : 반야월교회

☎ 결의사항

- ① 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다.
 - 가. 제2장 조직 제5조 4.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임후보할 시 위원은 그 지위는 유지되나 동일노회 후보자가 등록된 동일 후보군에 대하여 심의·결의 시에는 일체 참석할 수 없다.
 - 나. 그 외 조항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11(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3회 총회 결의사항 통지 건 중 정치부 232번 조직 개편(정치1부, 정치2부로 분리) 결의에 따라 규칙부가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해야 하는 것은 총회규칙 부칙 2항에 저촉됨으로 차기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가결하다.
- ②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 규칙 개정의 건은 총회규칙 부칙 2항에 저촉됨으로 차기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가결하다.
- ③ 규칙개정에 대한 규칙부의 답변을 별첨하여 총회임원회에 통보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9. 3. 25(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한 두가지 질문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하기로 하다.
 - 가. 선거에 대한 총회 결의 후 규칙이나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을 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임시로 진행할 수 있는가? 차기 총회에서 선거규정이 개정 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는 차기총회에서 선거규정을 개정 후 시행해야한다고 답변하기로 하다.
 - 나. 본 위원회에서 입후보 등록 시 연금가입 증명서를 추가로 받기로 결의하였는데, 선거규정 개정 없이 반영할 수 있는지? 제98회 결의 시 “이리노회장 장영성 씨가 현의한 총회 선거 규정 제3장 11조 총회 임원 입후보 등록 1항 총회장 자격에 ‘④총회연금 가입 후 3년이 경

과 한자' 삽입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므로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에 따라 연구하여 제104회 총회 시 제안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19. 4. 5(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도부에서 보내온 "규칙개정 청원의 건은 심의 연구하기로 하다.
- ②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보내온 '상설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통준위 제103-2호)'은 심의 연구하기로 하다
- ③ 교단연합교류위원회에서 보내온 '교단연합교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교단교류위 제103-2호)'은 심의 연구하기로 하다.
- ④ 제103회 총회수임사항(본부 제103-103호) 중 '장로회 각 치리 회의규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을 3인(권재호, 신현철, 박종일)을 선정하기로 하고 부장과 서기에게 맡겨 위촉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19. 4. 26(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3회 총회수임사항(본부 제103-103호)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전면 개정을 위하여 연구위원 3인 권재호 목사, 신현철 목사, 박종일 목사가 참석하여 연구방안을 검토하고 연구위원에게 맡겨 연구하여 개정안을 규칙부 임원과 논의하기로 하다.
- ② 순교자기념사업부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된 '순교 및 순직자 규정'은 시행 내규임으로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시행내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심의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내규대로 시행하도록 통보하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19(금)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연구를 위임받은 연구위원들에게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기로 하다.
- ② 제103회 총회결의에 따른 규칙개정 촉구의 건은 제4차 규칙부 임원회 결의대로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가결하다.
- ③ '법인정관 개정에 따른 심의요청' 건은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가결하다.
- ④ 총회역사위원회 관리규정 개정(안), 내규 심의 및 총회보고 요청 건은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함이 가하다고 가결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26(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동안주노회에서 질의한 김정호 목사의 총회 규칙 제9장 이중직 및 겸임금지 규정 및 총회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에 대하여 확인하니 김정호 목사의 선출 절차는 적법하게 되었고, 선거규정 기일 내에 이의 제기가 되지 않았고, 이중직 관련된 총회 규칙은 규칙 개정 이전에 선출된 것을 확인하고 부장, 서기에게 맡겨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5(월) 12: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함경노회가 제출한 '제99회 총회 결의가 신규식 목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 요청의 건'은 규칙부장 최윤길 목사 소속노회이므로 이석하고, 서기 김한욱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니 총회결의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부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와 총회 감사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 ② 제104회 총회 규칙부 보고 사항의 건은 정관을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므로 개별적 검토 후 차기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11(주일) 17:00

☞ 장 소 : 새안양교회

☞ 결의사항

- ① 제103회 총회 규칙부 수임사항은 권재호, 박종일, 신현철 목사에게 맡겨 연구하였으나, 연구 시간이 촉박하고, 공청회를 통해 총회산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년 연장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② 정치부 1,2부 분리에 따른 규칙개정은 정치1,2부 개편분리는 제104회 총회 결의와 규칙부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총회 내 제 규정 정관 법규 정비 건은 총회 규정집을 수정 보완하여 책자로 출판하기로 청원하기로 하고, 또한 디지털 규정집은 더욱 홍보되도록 보고하기로 하다.
- ④ 순교자기념사업부 규정 개정은 규정의 성격이 시행 내규이므로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시행 내규'로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다.
- ⑤ 총회산하정관개정연구위원회 청원하였던 총회 산하기관 정관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결의하고, 규칙개정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것은 총회 규칙에 부칙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을 보고하기로 하다.
- ⑥ 여성사역자 65세 정년 시행과 GMS독신 여성 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시행관련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은 총회규칙과 관련이 없고, GMS정관 등 필요사안에 삽입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기로 하다.
- ⑦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상비부 명칭 변경, 신설 결의에 따라 경목부, 군목부, 학생지도부 명칭변경의 건과 교정선교부 신설의 건은 규칙개정안은 총회 2/3결의로 개정이 되어야 하기에 제104회 총회 결의와 규칙부 심의 후 처리하기로 하다.
- ⑧ 전도부에서 요청한 규칙 개정의 건은 이만교회운동본부와 신설되는 교정선교위원회가 실행위

원회에서 결의 한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⑨ 유지재단 법인정관 개정 심의의 건은 개정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현 행	개정안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금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u>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시설 설치 및 운영)</u>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금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평생교육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사업 ⑧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⑩ 역사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의 건은 개정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현 행	개정안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당연직 - <u>총회 임원 3인(총회장, 서기, 회록서기)</u> 및 총무 선출직 - 각 구도별 6인 ~ 18인	당연직 - 총회장, 회록서기

⑪ 교단연합교류협력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의 건은 개정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현 행	개정안
제5조(조직)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u>총회임원 6인(총회장, 부총회장 2, 서기, 회록서기, 회계)</u> 및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15인)	제5조(조직)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15인)

⑫ 통일준비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의 건은 개정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현 행	개정안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u>총회임원 3인(총회장, 서기, 회계)</u> 및 총무 선임직 - 18인(각 구도별 6인)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회계 선임직 - 18인(각 구도별 6인)
2. 임원 :	2. 임원 :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30(금) 11:00

㉮ 장 소 : 총회회관

㉮ 결의사항

① 노회록검사규정 개정 요청의 건을 심의하니 개정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가. 제3장 작성원칙 제4조

현행 (인쇄회의록)	개정 후	사유
가로18.8 CM 세로25.8CM	회의록을 인쇄로 제본할시 가로20CM 세로29CM	수기사이즈와 동일 규격 으로 제작하기 위해

나. 제3장 작성원칙 제6조 2항 가

현행	개정 후	사유
가.기본규격 및 작성 방법은 위의 가 항의 1)-8) 과 같다	6조 1. 수기 작성시 가-아 와 같다.	가) 1)-8)은 규정집에 없기에 수정 요함

다. 제3장 작성원칙 제6조 1항 바

현행	개정 후	사유
수정한 후 여백에 몇 자를 수정했음	수정한 후 공백에 몇 자를 수정했음	사전적 의미로 공백이 맞음

②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안) 심의 청원의 건은 정관안(심의안)대로 보고하기로 하다.

③ 재판국 판결 중 '환부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은 환부라 함은 도로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고하기로 하다.



총회 규칙부 수입사항 처리결과 및 규칙, 정관, 규정 개정 심의안 보고

□ 제103회 총회 규칙부 수입 건 결과보고

1.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전면개정의 건
 -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연구시간이 촉박하고, 총회 공청회를 통해 총회산하 전국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년 연장 청원 하기로 함.
2. 정치부 1,2 부 개편 분리 규칙 개정의 건
 - 제104회 총회 결의와 규칙부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하기로 함.
3. 총회 내 제 규정 정관 법규 정비의 건
 - 총회 규정집을 수정보완하여 출판하고, 디지털 규정집을 더욱 홍보하기로 함.
4. 재판국 판결 중 환부에 대한 헌법 해석 질의의 건
 - 환부라 함은 도로 돌려주는 것이다.
5.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규정 심의의 건
 - 규정 성격이 시행 내규이므로 '순교 및 순직자에 대한 시행 내규'로 변경.
6. 총회산하정관개정연구위원회 청원하였던 총회 산하기관 정관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개정하도록 결의하고, 규칙개정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건
 - 현재 총회 규칙 부칙에 조항에 있기에 규칙대로 시행하면 됨.
7. 여성사역자 65세 정년제 시행과 GMS독신 여성 선교사 및 홀사모 선교사의 성례권 시행에 관련하여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의 건
 - 본 사항은 총회 규칙과 관련이 없고, GMS정관 등 필요사안에 삽입하여 규칙부 심의를 받아 시행되어야 함.

□ 상설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 결과보고

1. 역사위원회 : 개정안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당연직 - 총회 임원 3인(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및 총무 선출직 - 각 구도별 6인 ~ 18인	당연직 - 총회장, 회록서기

2. 교단연합교류협력위원회 : 개정안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5조(조직)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u>총회임원 6인(총회장, 부총회장 2, 서기, 회록서기, 회계) 및 총무</u>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15인)	제5조(조직)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15인)

3. 통일준비위원회 : 개정안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u>총회임원 3인(총회장, 서기, 회계 및 총무</u> 선임직 - 18인(각 구도별 6인)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회계 선임직 - 18인(각 구도별 6인)
2. 임원 : 가. 조직 :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서기-1인, 회계-1인, 총무-1인	2. 임원 : 가. 조직 :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1인, 회계-1인, 총무-1인

4. 세계교류협력위원회 : 개정안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u>총회임원 3인(총회장, 부총회장(목, 서기) 및 총무</u> 선임직 - 각 구도별 6인 -18인 나. 임기 : <u>7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u>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장, 서기,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 -15인 나. 임기 : 5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3. 전문위원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신교수 등 전문위원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신교수 등 전문위원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외교단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비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8조(교류단계)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제8조(교류단계)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1. 동반자관계 교류 그룹 2. 선교협력 교류 그룹 3. 일반협력 교류 그룹	1. 동반자관계 교류 그룹 2. 선교협력 교류 그룹 3. 일반협력 교류 그룹 4. 해외 한인교단 그룹: 해외 한인 장로교단으로 상호 교류 가능
2016년 2월 19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16년 2월 19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19년 9월 23일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목사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장 목사

5. 이단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은 총회 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에서 개정하여 통보할 것을 수임하였으나, 해당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심의하지 않음.

□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 규칙 개정의 건

현 행	개정안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9조(상비부) 1. 부원수 (7) 경목부 (12) 군목부 (16) 학생지도부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9조(상비부) 1. 부원수 (7) 경찰선교부(수정) (12) 군선교부(수정) (16) 학원선교부(수정) (22) 교정선교부(신설)
3. 각 부원의 임무 7) 경목부 12) 군목부 16) 학생지도부	3. 각 부원의 임무 7) 경찰선교부(수정) 12) 군선교부(수정) 16) 학원선교부(수정) 22) 교정선교부(신설)

심의결과 :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른 경목부, 군목부, 학생지도부 명칭변경과 교정선교부 신설에 대한 규칙개정은 2/3의 회원 결의로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104회 총회 결의와 규칙부 심의 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사료됨.

□ 유지재단 법인정관 개정안 심의 요청에 따른 심의의 건

현 행	개정안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평생교육원 총회신학원 시설 설치 및 운영)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평생교육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교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사업 ⑧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결과 : 개정안대로 개정할 것을 보고

□ 노회록검사부 '총회 표준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규정' 심의의 건

현행	개정안
제4조(회의록 규격) 2. 인쇄 회의록 : 회의록을 인쇄물로 제본 할 때에는 가로18.8cm, 세로 25.8cm로 제작한다.	제4조(회의록 규격) 2. 인쇄 회의록 : 회의록을 인쇄물로 제본 할 때에는 가로20cm, 세로 20cm 로 제작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1. 수기 작성 시 바.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해당란에 붉은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몇 자를 수정했음을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1. 수기 작성 시 바.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해당란에 붉은 줄을 긋고 수정한 후 공백 에 몇 자를 수정했음을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한다.
2. 책자로 제본 시 :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 인쇄하여 책자로 제본할 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규격 및 작성 방법은 위의 가.항의 1)~8)과 같다.	제6조(회의록 작성) 2. 책자로 제본 시 :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 인쇄하여 책자로 제본할 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규격 및 작성 방법은 6조1항 수기작성시 가-아 와 같다.

심의결과 : 개정안대로 개정할 것을 보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정관 심의의 건(총회신학원 보고 페이지 참조)

심의결과 : 정관대로 제정할 것을 보고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규칙부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규칙부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은 1년 연장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2. 제규정집을 출판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① 2016년 규정집이 출간되고, 5년이 지났기에 역사적 자료를 위해
 - ② 현재 디지털 규정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회원들의 사용편의를 단회적 출간
3. 재정청원 : 2500만원
 - ①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연구비 및 공청회(3개권역 진행) : 1,000만원
 - ② 제규정집 출판비(총대, 노회, 기관) : 1,500만원

2019년 9월

규 칙 부
부 장 최 윤 길
서 기 김 한 욱